(http://www.seojung.ms.kr)

학교급식 질 향상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2021. 식중독대책 운영계획

전주서중학교

5494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2

교무실 : 254-2667 **행정실** : 254-2666

식생활관 : 278-3659 **F A X** : 252-7394

목 차

Ⅰ. 식중독 비상대책반 구성

1. 필요성 ····· 1
2. 감시체제 구축 및 운영 ····· 1
3. 식중독 대책반 구성. 훈련 ····· 2

Ⅱ.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1. 사안 대처 기본방향 ····· 4
2.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단계별 대처요령 ····· 4

Ⅲ. 식중독 발생 시 기관별 협조사항

1. 학교 협조사항 ····· 13
2. 교육청 협조사항 ····· 14
3. 역학조사 시 역할분담 ····· 14

Ⅳ. 식중독 발생 후 조치사항

1. 급식 재개 ····· 15
2. 원인제공자에 대한 조치 ····· 15
3. 학교급식 위생사고 보상 ····· 15

Ⅴ. 식중독 모의훈련(권장)

1. 모의훈련 시 확인사항 ····· 16

Ⅵ. 보고서식

1.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보고 ····· 20
2.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보고 ····· 22
3. 집단환자 발생 현황보고(예시) ····· 23
4.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보고(예시) ····· 24
5.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시 관련 점검 확인사항 ····· 26
6. 학교급식 위생사고 및 위생 · 안전 점검 결과 행정처분 기준 ··· 28
7. 식중독 모의훈련 자료(예시) ····· 33
8. 가정통신문(예시) ····· 37

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제5차 개정판, 교육부, 2021.2.)

❍ 학교급식 기본방향(전북교육 2021-125)

Ⅰ 식중독 비상대책반 구성

1. 필요성

식중독이란 식품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수십 명, 수백 명에 이르러, 학생 개인의 건강위협은 물론, 사고수습을 위한 학교장 및 교직원의 노고, 수업결손으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 학부모들의 정신적·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며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항상 급식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편, 이러한 식중독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의 발생에 대비하여 집단발병을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히 치료하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유사한 위생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은 필요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학교 내 집단환자 감시체계 구축·운영

- 평소 교내 집단 환자 감시체계 구축 · 운영을 통한 신속한 환자파악 및 치료조치
- 학교 집단 환자 감시체계

학 생	⇨	담임교사	⇨	보건교사·학교장	⇨	관할청/시 · 군 · 구
(설사 등 증세)		(학급별 환자파악)		(학교별 환자집계·분석)		(지역전체 모니터)

- 감시체계 담당자의 역할

· 담임교사 ⇒ 매일 결석, 조퇴 등 평소와 다른 양상이 있는지의 여부 모니터링

· 보건교사 ⇒ 담임교사 모니터링 결과 및 보건실 이용자 증상을 평소와 비교하여 집단 환자 발생여부 모니터링

○ 학교 집단환자 발생 신속 보고

- 학교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군·구(보건소)에 신고

※ 은폐 또는 미신고 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교육청은 관계자 엄중 문책

- 학교 자체적으로 환례정의를 결정하여 환자현황 조사

⇒ 환례정의 : 식중독 의심환자를 구분하는 환자증세의 기준

예) 하루 설사 3회 이상이 있고, 구토·복통·발열 중상 중 1가지 이상 동반된 유증상자 등

※ 최종 환례 정의는 역학조사팀에서 결정함

- 신고절차 : 초·중·고·특수학교 → 시·군·구청 및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보고(신고)방법 : 최초 유선보고(신고) 후 교육(지원)청 서면보고

3. 식중독 대책반 구성 · 훈련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평소 학교단위의 '식중독 대책반'을 구성·훈련토록 하여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대책반의 조직과 분담업무는 다음과 같다.

○ 총괄대책반 : 각 대책반의 지휘·감독

○ 환자파악팀 : 기 발생환자 및 유증상자 등 추가 발생현황 파악

○ 환자이송팀 : 환자의 후송, 입원학생 관리 등

○ 역학조사협력팀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검체 채취, 소독 등 업무협조

○ 학사대책팀 :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협조유도 및 수업결손 대책 마련 등

○ 행·재정지원팀 :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및 대책 논의, 학교 시설 관리 등

- 식중독 비상대책반 구성 후 담당자 임무 숙지 및 확인 철저

- 학교 식중독 비상대책반 편성 및 운영(예시)

학교 식중독 대책반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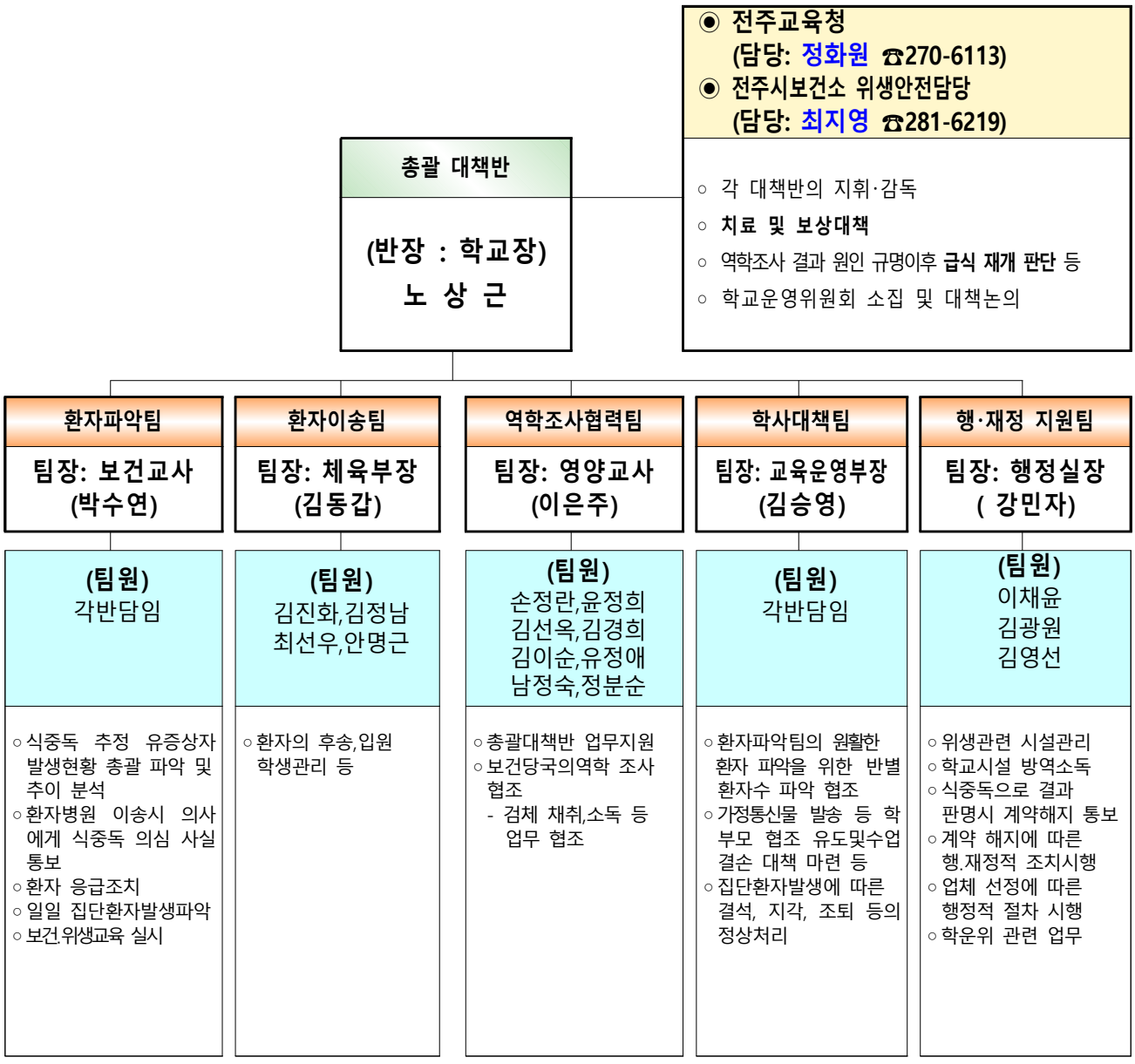

※ 학교사정에 따라 업무분장 변경 가능

※ 보고자 지정 및 보고사항(발생 보고·신고, 일일환자 발생보고, 종결보고) 보고철저

※ 최초 유선보고(신고)후 교육(지원)청 서면보고

2021년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시 기관 연락처

순	기관명	담당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핸드폰)
1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전은주	239-3396	
2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정화원**	**270-6113**	유선 최초 보고
3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	**최지영**	**281-6219**	유선 최초보고
4	전주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위생지도)	강현윤	270-6437	
5	전주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위생지도)	라희재	220-5437	
6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	최현정	281-2371	

Ⅱ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1. 사안 대처 기본방향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교육청과 관할 시·군·구에 즉시 신고

○ 급식중단 및 식중독 환자 치료조치와 확산 방지

○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 및 급식시설 현장보존 철저

○ 가정통신 발송 등으로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 유도

○ 개인위생지도 강화 및 학교 환경위생관리 철저

2.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단계별 대처요령

가) 제1단계 ⇒ 식중독 발생 의심

□ **식중독 발생 의심 모니터링 실시**

○ **담임교사**는 매일 결석, 조퇴 등 평소와 다른 양상이 있는지 모니터링하여 집단 식중독이 의심될 경우 보건교사에게 신고

⇒ 복통·설사 등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환자 발생 즉시 보건실로 안내

○ **보건교사**는 담임교사 모니터링 결과와 보건실 이용자 증상을 비교하며, 필요시 인근병원까지 모니터링하여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집단 식중독 환자발생 의심」이란?】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식중독 증상 환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집단 식중독 환자발생으로 의심

나) 제2단계 ⇒ 식중독 의심환자 조사 신고

□ 학교장은 긴급 부장교사 회의 소집

○ 참석대상 :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 전교생을 대상으로 환자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학교자체 환례정의 결정

【환례정의(患例定儀)란?】

식중독 의심환자를 구분하는 환자증세의 기준

(예, 하루 설사 3회 이상이 있고, 구토·복통·발열 증상 중 1가지 이상이 동반된 유증상자 등)

※ 최종 환례 정의는 역학조사팀에서 결정함.

○ 유증상자 현황 조사방법 결정

- 담임교사 1차 조사 :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표(서면) 또는 거수(구두)로 조사
- 보건교사 2차 조사 : 1차 조사결과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조사
- 조사과정에서 학생 동요로 환자가 아닌 학생이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

예) 감기, 눈병 등 다른 질병과 함께 조사 등

[조사표 예시]

순	학년	반-번호	이름	주요증세				출결사항			치료현황			전일 학교 급식 횟수	특이사항
				설사	발열	구토	복통	등교	결석	기타	입원	통원	투약/자가치료		

□ 담임교사에게 유증상자 조사요령 교육

○ 학교장은 조사과정에서 학생의 동요로 실제 환자가 아닌 학생이 환자로 파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전에 반드시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방법 등 교육

○ 교육내용에는 조사목적, 대상학생, 조사방법,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

○ 담임교사 책임 하에 각 반별로 전교생을 대상(결석학생 포함)으로 조사한 후, 결과표를 보건교사에게 제출토록 함.

- 담임교사는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환자발생 분포도를 파악하여 하교 후 친구들과 학교주변 매식, 학원에서의 간식, 외부음식 반입, 현장학습 등 조사한

결과를 반별 집계표와 함께 보건교사에게 정보 제공

□ **전교생 대상 유증상자(환자) 현황 조사**

○ 담임교사는 각 반별로 유증상자 현황을 조사하여 보건교사에게 제출

- 병원이송 및 결석, 조퇴학생은 개별 역학조사를 위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사전 파악 관리

○ 보건교사는 담임교사가 제출한 유증상자 현황자료를 토대로 개별면담 실시

- 유증상자가 많지 않을 경우 보건실에게 개별면담 실시
- 유증상자가 많아 면담 소요시간이 길 경우 일부만 개별면담 실시

○ 담임교사가 제출한 유증상자 현황 집계결과 및 보건교사의 개별면담 실시 결과와 인근병원 모니터링 결과를 포함하여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 **교육지원청 및 시·군·구에 신고**

○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식중독 증상 환자가 2명이상이면 「집단 식중독 환자발생 의심」으로 판단하고 즉시 유선 또는 FAX로 관할 교육지원청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2명 미만일 경우에는 종결처리

- 보고시기 : 집단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인지 후 즉시 보고(신고)
- 신고내용 : 발생일시, 환자수, 환자 증세, 추정원인(원인불명, 외부음식, 현장학습 등) 등

다) 제3단계 ⇒ 역학조사 실시[신고당일]

□ **「학교 식중독 대책반」 가동**

○ 운영기간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 급식재개 실시까지

○ 「학교 식중독 대책반」은 학교장을 총괄대책반 반장으로 하고, 환자파악팀, 환자이송팀, 역학조사협력팀, 학사대책팀, 행·재정적 지원팀 등으로 구성·운영

□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 이송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함

○ 담임교사는 설사증세 등이 심하여 입원, 결석, 조퇴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출결처리 내용, 식중독 판명시 치료비 대책 등을 안내하고, 학생 및 보호자를 위로하여 심리적 안정 도모

☞ **식중독관련 결석학생 출결처리**

[교육부 훈령 제127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참고]

□ **급식중단 및 임시 급식대책 마련**

○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학교는 설사환자 확산방지 및 원인규명을 위해 급식중단

-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대책 강구** : 급식해결 방안(개인별 도시락 및 음용수 지참 등), 수업결손 및 결식학생 대책 마련, 학생 개인위생 강화, 가정통신 등

○ **가정통신문 내용**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경위 및 환자 치료현황, 급식중단에 따른 개인별 도시락 및 음용수 지참, 치료 및 보상대책, 개인위생 관리 방법, 출결처리 등

○ **학교급식 재개**

• 교육청 및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관과 협의하여 결정

- 단순 식중독의 경우는 집단발병이 수습되고, 발생 원인이 제거되어 재발 요인이 없다고 판단 시
- 세균성 이질 등 식품매개 전염병으로 밝혀진 경우는 당해 학생들에게 유행이 없고 위생적 급식환경이 조성되며 조리종사원들의 보균검사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마지막 확진 환자 발생후 1주일 이후에 급식 재개

• 급식 재개 준비 철저

- 식생활관 청소 및 식기구 소독과 조리기기 작동 점검
- 식생활관 및 화장실 등 교내 방역 및 조리종사원 교육 실시
- HACCP 시스템에 의거 위생• 안전 관리 철저

□ **언론보도 대처방안**

○ 학교는 언론기관 인터뷰, 자료제출 등 언론대응 창구를 단일화(식약처)하고, 유관 기관(교육청, 시・군・구 등)의 언론대응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

○ 개인의 추측, 의견 등을 자제하고 근거에 의한 정확하고 일관된 자료 제공

□ **역학조사 실시 : 기관별 역할**

구분	역할 및 임무
학교 및 교육청	○ 역학조사의 원활한 진행 협조
보건소 시·군·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 역학조사 및 가검물 채취 (급식종사자 및 발병학생 채변, 먹는물 등) ○ 원인추정 보존식, 식재료, 구내매점 및 학교주변 판매식품 등 수거 ○ 식품유통, 반입현황, 조리, 이동경로에 대한 계통조사

1) 학교 역학조사 협조

○ 현장보존 철저

- 교육청 및 시・군・구(보건소) 역학조사반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보존(훼손금지) 철저

※ 식생활관은 관계자이외 출입 통제

- 보존식 훼손 금지 :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소독 등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됨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제95조]
- 정수기, 지하수, 물탱크 등 현장보존(소독, 청소 등 금지)
- 칼, 도마, 행주, 등 환경 가검물 보존(조리실 청소, 소독 등 금지)

○ 역학조사 진행 협조 - 역학조사 시 교직원 역할분담(예)

구분	역할 및 임무
담임교사	○ 식중독 징후(설사/복통/구토/발열) 환자 파악 및 역학조사 협조
보건교사	○ 식중독 징후 환자 모니터 자료 취합/정리/분석 ○ 보건실 이용환자에 대한 실태파악/분석 ○ 역학조사 전 환자에게 약물투여 금지 ○ 보건교육 기획 및 실시 등
영양(교)사	○ 보존식 확보(위탁급식학교 학교측에서 확보), 환경가검물 채취 협조 ○ 관련서류 확보 등

- 역학조사 종료 전까지 학생 귀가 보류
- 한 장소에 환자를 집결시켜 역학조사(채변 및 설문조사) 협조
- 보건실 방문환자 역학조사 전 환자에게 약물투여 금지
- 역학조사반의 식재료, 보존식, 음용수 및 조리수, 환경가검물(칼, 도마, 식판 등), 환자 가검물 채취에 적극 협조 및 입회
- 전교생을 대상으로 유증상자 조사현황 및 최초 발명 일시, 급식여부 등을 기록 제공

  ⇒ 질병에 따라 잠복기가 긴 질환이 있으므로 매일 환자 현황을 파악하여 신환자를 추가로 기록
- 역학조사 시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외부반입 음식, 학교주변 판매식품 등 식중독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식품을 채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

2) 교육지원청 역학조사 협조

○ 공동조리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감염원 조사를 위한 학교 간 협조 및 조정역할 수행

○ 집단발생이 세균성이질 등 제1군 감염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확산방지를 위하여 설사환자 감시체계 운영 및 환자발생 현황 파악

○ 월간식단, 급식일지, 환자발생 분포도 및 급식 외적인 요인(외부음식 반입, 현장학습 등)을 파악하여 역학조사 협력 및 급식재개 협의

○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입력 지도, SMS문자 발송, 관내 모든 급식 학교에 위생관리 강화 공문 발송, 역학조사 결과 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확산 및 유사사례 발생 방지 노력

○ 당해 학교 특별 위생점검 및 지도 강화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위탁급식업체 운영학교 모니터링 관리 등
○ 관계기관(학교, 교육지원청, 역학조사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파악하여 정보 공조체제 유지
- 환자명단, 진행상황, 언론대응 등

3) 역학조사 실시(보건소, 시·군·구청, 식약청)

○ 설문조사 실시
- 대상자 : 유증상자 및 영양(교)사·조리종사원 그 외는 역학조사관이 결정
- 조사방법 : 설문자와 응답자가 일대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대규모 발생 시 교실, 강당 등에서 설문 문항별 설명을 통해 단체로 시행 가능
- 조사목적 : 발병일시, 환자의 증세, 학반별 분포, 식단·음료수, 기타(외부음식 섭취 등) 발병률을 비교 분석하여 원인 병원체를 확인하고 감염원 및 감염경로 규명에 활용

○ 채변검사(대변검체, 직장도말검체)
- 대상자 : 유증상자 및 영양(교)사·조리종사원 그 외는 역학조사관이 결정
- 대변검체(1개) : 입원환자와 증상이 심한 유증상자는 가급적 대변검체 채취
- 직장도말검체(2개) : 면봉을 수송배지액에 적신 후 대상자의 직장(항문)에 2.5~4cm정도 삽입 후 천천히 돌려 채취하여 수송배지에 넣음
- 검사항목 및 결과 : 식중독균 및 바이러스 검사/약 5일

○ 보존식 수거
- 대상 : 최근 144시간 동안 보관된 중식(조식, 석식 제공시 모두 포함)
- 검사방법 : 시·군·구청 역학조사반이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검사항목 및 결과 : 식중독균 및 바이러스 검사/약 7일

○ 음용수 및 조리수 수질검사
- 대상 : 정수기, 저수조물, 조리용수 등
- 검사방법 : 1l 멸균팩에 각 1건씩 채수하여 일반세균, 대장균 등 검사
- 검사항목 및 결과 : 약 5일

※ 식품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 검사 실시

○ 환경 가검물 채취
- 대상 : 칼, 도마, 식판 등
- 검사방법 : 면봉을 수송배지액에 적신 후 채취한 후, 수송배지에 넣음
- 검사항목 및 결과 : 미생물 검사/약 7일

○ 조리과정 및 조리장 환경조사
- 대상 : 식단표 조사(최근 2주간), 식자재 수거 검사, 조리장 환경조사 및 조리과정 면담조사

□ **학교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 서면보고**

○ 환자발생 당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종료 후 즉시 관할 교육청으로 서면보고

라) 제4단계 ⇒ 환자발생 익일 이후

□ **환자발생 현황 보고**

○ 학교는 환자발생 현황을 발생 익일부터 완치일까지 매일 2회 관할 교육청으로 보고

- 1회 : 09:30까지 팩스, 전자우편 보고
- 2회 : 16:30까지 서면보고

□ **개인위생 및 학교 환경위생관리 강화**

○ 음식 섭취 전, 용변 후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물 끓여 먹기 지도 및 가정과 연계지도

○ 급식실 및 화장실 등 교내 방역 실시

○ 유증상자 사용 물품(의자, 책상, 소지품 등) 및 책상면, 손잡이 등 소독 실시

□ **위생취약분야 위생관리 대책 수립**

○ 구내매점에서 위생취약 제품 판매 금지

○ 외부음식 반입 금지

○ 정수기 급수 중단 및 끓인 물 제공 등

○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부정, 불량 식품 매식금지 등 생활지도

마) 제5단계 ⇒ 역학조사 결과 통보 이후

□ **역학조사 결과 통보**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학교로 통보(1개월 이내)

□ **학교 집단 식중독 의심환자 원인조사 결과 보고**

○ 보건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학교는 관할 교육청으로 종결보고

- 보고내용 : 발생개요, 급식실시 현황, 주요 조치내용, 식중독 원인 조사결과, 시사점 및 향후대책 등

□ **식중독 발병학생 치료비 등 보상대책 마련**

○ 피해 학생에 대한 진료비 보상 청구

판단 항목	직영급식	위탁급식
1. 식중독 원인균 검출 (식재료에 의한 원인)	납품업자 보상	위탁급식업자 보상
2. 식중독 원인균 검출 (조리부적정 등 취급소홀, 종사자 및 시설오염 등)	학교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위탁급식업자 보상
3. 식중독 원인균 미검출 (원인불명)	학교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자 결정

□ **관련자 처분**

○ 식중독 발생 원인에 따라 관련업체 제재 및 원인 제공자, 관리자 등 조치

※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 ⇒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 [학교급식법 제22조 참조]

○ 식중독 미보고 및 보존식 미보관시 식품위생법에 의거 처분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식중독 발생 의심		■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 학생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가 신속하게 보건실로 안내 ⇒ 보건교사는 동일원인·증상이 2명이상 발생 시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으로 의심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		
식중독 의심환자 조사신고		■ 학교장은 긴급 부장회의 소집(유증상자 현황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 결정)⇒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요령 교육 ■ 담임교사는 각 반별(전교생)로 조사하여 유증상자는 ⇒ 보건교사가 개별 면담 후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 ⇒ 학교장은 동일원인·증상 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 즉시 유선신고〔관할 시·군·구청, 교육(지원)청〕
⇓		
역학조사 [신고당일]	**학교**	■ 역학조사 전에 환자에게 약물투여 금지 및 급식·급수 중단 조치 ■ 역학조사 실시 전까지 대상자(학생, 급식관계자,) 귀가 보류 ■ 현장보존 철저(보존식, 먹는물, 식재료 등 보존, 소독, 폐기 등 금지) ■「학교 식중독 대책반」가동⇒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지원, 응급환자 병원 이송, 수업결손 및 결식학생 대책 마련, 언론보도 대응, 치료 및 보상 대책 검토 등 ⇒ 가정통신문 발송 ■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보고 : 서면보고(역학조사 후 즉시) ■ 관할 시·군·구청, 교육청과 정보공유(환자발생 현황 및 언론보도 대응 등) ■ 역학조사 협조 및 학교 식중독 대책반 업무 지원 ■ 학교위생관리 실태조사 ⇒ 원인파악, 특별 위생점검 및 지도 강화 ■ 확산방지 노력 및 환자발생 현황보고[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 역학조사 실시 ⇒ 환자 및 급식관계자 설문조사, 채변검사 (한 장소에 집결) ■ 음용수 및 조리수 수질검사 ■ 환경 가검물(칼, 도마, 식판 등) 채취 ■ 보존식 수거[최근 144시간 동안 -18℃ 보관된 보존식] ■ 조리과정 및 조리장 환경조사 ■ 집단급식소 관련 행정사항 조사 ⇒ 각종 신고사항 등
	교육청	
	역학조사 / **보건소/시·군·구/식약청**	
⇓		
환자발생 익일 이후		■ 환자발생 현황보고(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 완치일까지 매일 2회 보고 (1회 : 09:30까지 유선, 2회 : 16:30까지 서면) ■ 교내방역 및 학생 개인위생지도 철저 ■ 외부음식 반입금지 등 위생취약분야 관리 철저
⇓		
역학조사 결과 통보 이후		■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학교는 교육청으로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결과보고” 제출 ■ “학교식중독”으로 판명 시 관련자 처분 및 업체 계약해지 등 ■ 후속조치(환자보상금 지급, 계약보증금 징구, 업체선정 및 계약 등)

Ⅲ 식중독 발생 시 기관별 협조사항

1. 학교 협조사항

- 학교장은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군·구(보건소)에 즉시 신고
- 학교장 주재 대책회의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초동단계 신속 대응조치 강구

※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시 사전 조치(확인 및 준비사항) 이행(인성건강과-12398, 2017.5.22)

- 학교 식중독 대책반 운영, 관계기관 협업, 환자 치료와 급식대책 마련 등 혼란 방지 및 학사 일정 차질 최소화

· 급식중단, 오염식품 사용금지, 도시락 지참 및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대책 마련, 급식 재개 시는 보건소 등 방역당국과 협의 등

- 보존식을 폐기하지 않으며, 먹는 물에 대한 소독 실시 금지

·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보건소의 역학조사 가검물 수거 이후 폐기 및 소독을 실시

· 식중독 발생 등으로 관계기관에 보존식 인계 시 수거증을 받고 인계 (책임소재 명확화)

- 학년 및 반별로 복통 및 설사증상이 있는 학생을 신속히 파악하여, 최초 발병일시 및 급식 여부를 기록. 질병에 따라 잠복기가 긴 질환이 있으므로 매일 환자현황을 파악하여 새로운 환자를 추가 기록

※ 실제 환자가 아닌 학생이 환자로 파악되지 않도록 유의

- 질병 확인을 위한 보건소의 환자 채변 및 설문조사에 협조
-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에게 식중독 등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가정에서 발병 시 보건소 또는 인근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지도
- 손씻기, 물 끓여먹기 등 학생 위생교육 강화
- 보건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교육지원청으로 종결보고

※ 보고내용 : 발생개요, 급식실시 현황, 주요 조치내용, 식중독 원인 조사결과, 시사점 및 향후대책 등

2.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 발생 학교의 역학조사가 학교와 보건당국의 협조 하에 신속·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 공동조리교에서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는 감염원 조사를 위한 학교간의 협조 및 조정역할 수행
- 집단발생이 세균성이질 등 제1군 전염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설사환자 감시체계 운영 및 환자발생 현황 파악

3. 역학조사 시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및 임무
학 교	담임교사	◦ 설사환자 파악 및 역학조사 협조 ◦ 보건교육 실시 등
	보건교사	◦ 이용환자에 대한 실태파악, 분석 ◦ 보건교육 기획 및 실시 등
	영양(교)사	◦ 보존식 확보 ◦ 안전한 급식 및 식수제공 등
교육(지원)청		◦ 역학조사의 원활한 진행 협조
보 건 소		◦ 역학조사 및 가검물 채취, 설문조사 실시 ◦ 환자치료 및 필요시 입원격리 등
시·군·구청의 식품위생관련부서		◦ 원인추정 음식 및 음용수 채취 ◦ 식품유통, 반입상황, 조리, 이동경로에 대한 계통조사

○ 학교급식 이외 식중독 사고 예방관리 철저

- 학교장 허락 없이 학부모 등이 임의로 간식 제공사례 금지

※ 불가피하게 외부음식 반입할 경우는 반드시 “보존식 관리 요령”에 의거 보존 관리 철저

- 현장체험 및 수련회,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 수행과정에서 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관할 시·군에 일정을 통보하고 위생·안전점검 요청(공문 발송)
-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과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연계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식중독 발생 시 신속전파 등 대응체계 운영(’14~)

※ 전자계약 미실시 학교는 식재료 공급업체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에 입력

Ⅳ 식중독 발생 후 조치 사항

1. 급식 재개

- 식중독 등 집단발병이 수습되고,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식중독 재발요인이 없으면 학교에서는 급식을 재개
- 단순 식중독의 경우는 그 발생 원인이 제거되어 재발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식생활관 및 급식설비·기구 청소와 소독, 조리기기 작동점검, 조리종사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급식을 재개하되, 이후 급식관리는 HACCP시스템에 의거 위생·안전관리에 철저

2. 원인 제공자에 대한 조치

- 원인 제공자에 대한 조치 : 학교식중독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는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인제공자 책임 원칙으로 엄중조치
- 원인이 식재료 또는 위탁급식에 있을 경우 : 학교장은 동 업체와의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촉구

※ 업체가 공급한 식재료 또는 급식품에 의해 식중독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계약해지 될 수 있음을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

- 급식종사자의 보균 또는 명백한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 당초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채용 기관의 장이 인사 상 적절한 조치

※ 식중독 원인을 제공한 경우 인사 상 조치조항 근로계약 시 명시

- 영양(교)사, 학교장 등의 관리 소홀에 원인이 있을 경우 : 관리책임의 경중에 따라 교육감(장) 또는 학교장이 조치(학교급식 위생사고 및 위생·안전점검결과 행정 처분)
- 보존식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 담당자 및 관리자 문책

3. 학교급식 위생사고 보상

- 직영급식은『학교안전공제회』학교급식 위생사고 보상규정 적용, 위탁급식은 급식업체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
- 학교장은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학교안전공제회에 신고

※ 사고에 따른 치료비 청구와는 별도 진행

※ 미통지에 따른 과태료 : 1회 위반 10만원, 2회 위반 30만원, 3회 위반 50만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3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4조 (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②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Ⅴ 식중독 모의훈련(권장)

1. 모의훈련 시 확인사항

○ 회의체 구성 : 환자파악팀, 환자이송팀, 역학조사협력팀, 학사대책팀, 행·재정지원팀 각 반별 구성원 확인과 임무 숙지 확인

○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환자파악, 신속보고, 현장 대응체계 및 관계기관협조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

☞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업무처리**(표 1-1), (표1-2)** 참고

○ 협조기관 연락 : 협조기관의 담당자와 연락처 변경 없는지 확인(교육지원청, 시*군청)

○ 선정된 협조 병원 확인과 유사 시 협조 사항 당부

○ 보존식 및 CCP기록 확인 : 보존식 보관상태 재점검

<표 1-1>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해당일) 업무처리

【의심환자 발생 해당일 업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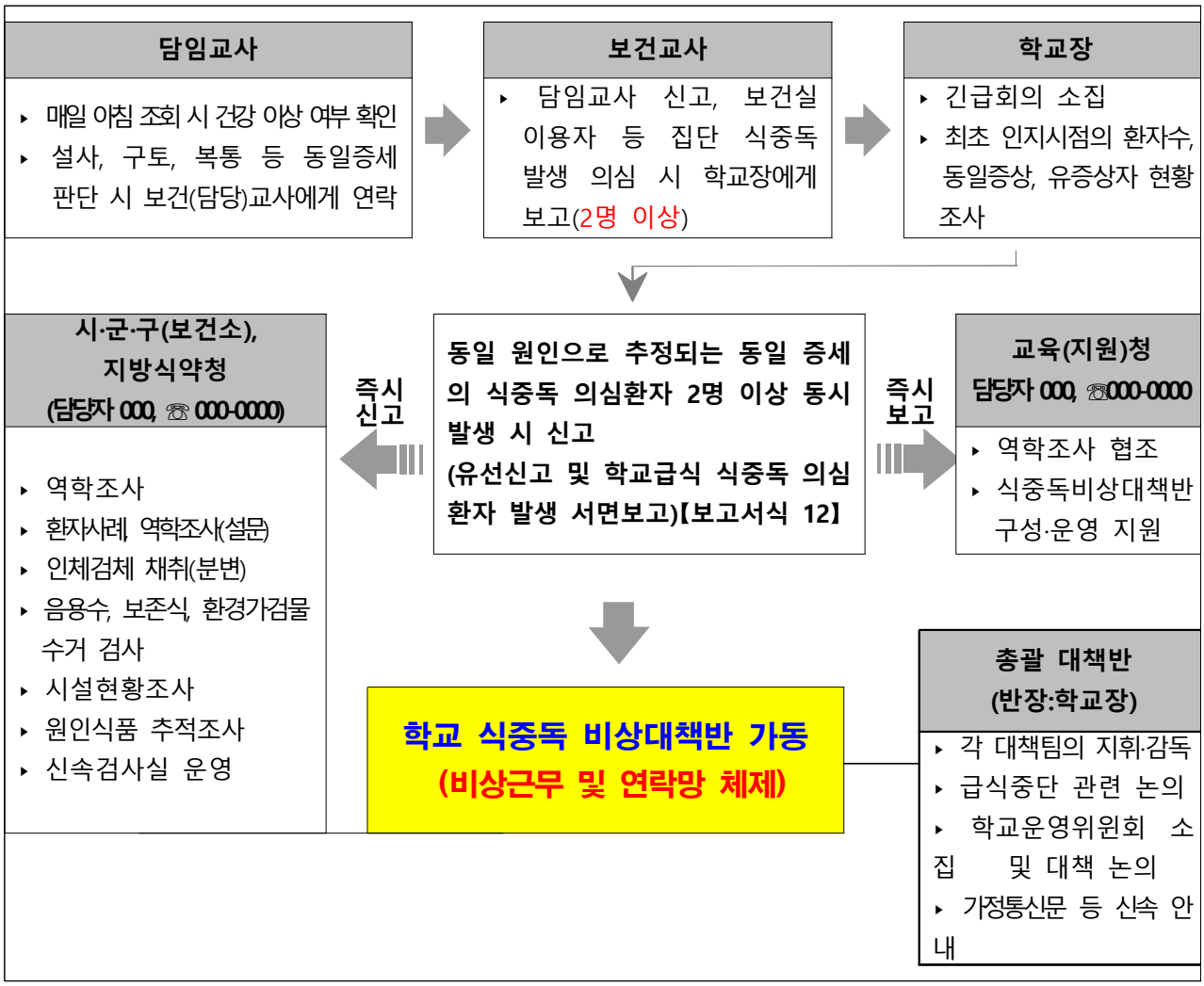

<표 1-2>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다음날 이후) 업무처리

【의심환자 발생 다음날 이후 업무처리】

식중독비상대책반 가동

환자발생현황보고
- 유증상자 지속 모니터링
- 환자 완치일 까지 매일 보고

교내 방역 실시
- 식생활관 및 교사 내 전체 방역 실시

학생개인위생지도
- 손 씻기, 물 끓여 먹기 등 학생 위생교육 강화
- 가정통신문 발송

기타 위생관리 강화
- 외부 음식 반입금지 등 위생취약분야 관리 철저

역학조사 결과 통보
- 소요기간
- 검체검사: 5~7일
- 최종 역학조사결과: 1개월 내외
- 역학조사기관→학교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보고서식 12】
- 시기: 환자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내용: 역학조사 결과 통보 내용 등
- 보고체계: 학교→관할 교육지원청

※ 역학 조사 결과 보고서의 수신이 1개월 이상일 경우는 수신 후 보고

급식 재개
- 역학조사기관등과 협의하여 결정
- 가정통신문 발송
- 조리장 소독 등 급식 재개 준비 철저
- 교육 등 위생관리 철저

식중독 발병학생 치료비 등 보상
- 역학조사 결과 및 학교급식 관련 계약 내용에 따라 치료 및 보상대책 마련
- 식재료나 위탁급식이 식중독 원인인 경우, 납품업체나 위탁급식업체가 보상하고 그 외는 반드시 학교안전공제회 통보하여 치료비 보상

사고발생 원인에 따른 조치
-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거 책임규명, 원인제공자에 대한 조치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 시 처분기준-전라북도교육청, 2017.12.29., 일부개정)
- 학교급식 식중독으로 판명 시 관련자 처분 및 업체 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과태료 납부, 계약보증금 징구, 업체선정 및 계약 등)

종 결

Ⅵ 보고서식

[서식 1]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서식 2]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
[부록 1] 집단환자 발생 현황보고(예시)
[부록 2]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보고(예시)
[부록 3]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시 관련 점검 확인사항
[부록 4] 학교급식 위생사고 및 위생·안전 점검 결과 행정처분 기준
[부록 5] 식중독 모의훈련 자료(예시)
[부록 6] 가정통신문 자료(예시)

[서식 1]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21.3.27. ○○학교, ○○교육지원청)

<요약>
'21.3.27.(금), ○○도 ○○시 △△고등학교(공립, 직영)에서 식중독 의심환자 ○○명 발생

1. 학교 현황

학교명	설립구분	급식형태	학교규모		영양(교)사
			학생수	교직원수	
○○학교	공립	직영/상수도	500	45	주아무개

2. 발생현황

○ **인지일시** : 3.27.(금) 10:30경

- (인지상황) 3-1반 담임 000이 담당학급 학생 중 설사증상 학생이 2명 발생함에 따라 학교장에 보고

○ **보건소 신고일시** : 3.27.(금) 11:00경 △△보건소(신고자 : 교감 000)

- 신고시점 기준 (의심)환자 현황 : 총 11명 (학생 10명, 교직원 1명)

○ **학교 조치내용**

- 학교에서 조치한 주요 내용(추가 환자 파악, 교내 소독 등)

※ 학교자체 대책회의 등을 개최한 경우 회의 주요내용 및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요약

3. 역학조사 등 조치사항

○ **현장방문 및 대책회의 참석자** : 00교육지원청 식품위생주사보 ○○○

○ **역학조사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 (가검물 채취) 환자가검물 건, 환경가검물 건
- (추정 감염경로 및 원인식품)
- (급식 여부) 급식 중단 없음 / 0월0일부터 0월0일까지 급식 중단
- (기타 중요 결정사항 등)

4. 환자 세부현황

○ 사례 정의:

○ 학생 환자 현황('21.3.27. 17시 기준)

구분	학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수							
환자수							

5. 참고사항

○ 언론취재 :

○ 기타 :

※ 보고시기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인지즉시(교육청 및 시·군·구에 신고)

[서식 2]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보고

1. 발생개요

○ 학교명, 설립별, 급식형태, 소재지 등

○ 주요증세, 일자별 발병 및 치료현황 등

○ 학교의 인지시기,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일시

2. 급식실시 현황

○ 급식인원(학생, 교직원), 종사원수, 급식시간, 식단내용

○ 식재료납품업체 및 위생관리 현황 등

3. 주요 조치내용

○ 일자별, 기관별 주요조치 내용

- 안전공제회 등의 보상내용, 관련업체 조치 및 관련자 문책 등 포함

4.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 식단작성, 식재료검수, 종사자건강 및 위생상태, 조리작업과정 등 조사결과

○ 역학조사 설문조사, 보존식 및 환자가검물, 환경가검물 검사결과 등

○ 보건소(역학조사관)의 종합결론

5. 시사점 및 향후계획

○ 식중독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시사점

○ 식중독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 보고시기 : 마지막 환자 발생 후 1개월 이내(종결보고) **《부록 1》**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로 갈음 가능

《부록 1》 일일환자 발생 보고 서식

집단환자 발생 현황 보고(예시)

학교명 : OO학교

◎ 보고일시 : 0000. 1. 2.(목). 09:30현재

일시	환자수			완치 환자수 (누적)	현재 환자수	치료현황				비고 (결석)
	최초 발생	추가 발생	합계 (누적)			입원	통원	자가 치료	계	
1.2(목)	17	35	52	0	52	0	7	45	52	6
1.3(금)		15	67	37	30	0	14	16	30	4
1.4(토)		0	67	64	3	0	0	3	3	0
1.5(일)		0	67	66	1	0	0	1	1	0
1.6(월)		0	67	66	1	0	0	1	1	0
1.7(화)		0	67	67	0	0	0	0	0	0

※ 환자발생 익일부터 완치일까지 매일 오전 09:30까지 팩스, 메신저 보고
〃 매일 오후 16:30까지 업무관리 서면보고

※ 환자수
- 식중독 사례정의 환자수 기록
- 결석 학생 중 식중독 의심으로 치료 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비고(결석)란에 결석 학생수 표기

《부록 2》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예시)

기관명 : ○○교육지원청(○○학교)

1. 발생개요

가. 학교현황

학교명	설립별	급식형태	소재지	비고
○○학교				

나. 환자발생 현황

○ 주요증세 : 복통 및 설사

○ 환 자 수 : 전체 급식학생 00명 중 00명(0.0%)

○ 학교의 인지시기 : 0000년 1월 2일(목) 오전 8시 30분경 발병상황 인지

⇒ ○○교육청 보고 및 ○○시·군·구청 신고일시 : 0000년 1월 2일 오전 11시 30분경

○ 일자별 발병 및 치료현황

일시	환자수			완치 환자수	현재 환자수	치료현황				비고 (결석)
	최초 발생	추가 발생	합계			입원	통원	자가 치료	계	
1.2(목)	17	35	52	0	52	0	7	45	52	6
1.3(금)		15	67	37	30	0	14	16	30	4
1.4(토)		0	67	64	3	0	0	3	3	0
1.5(일)		0	67	66	1	0	0	1	1	0
1.6(월)		0	67	66	1	0	0	1	1	0
1.7(화)		0	67	67	0	0	0	0	0	0

2. 급식실시 현황

가. 급식운영 현황

○ 급식인원 : 학생(재적 00명, 급식 00명), 교직원(재직 00명, 급식 00명)

○ 종사원수 :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원 00명

○ 급식시간 : 12:10 ~ 13:00까지

나. 식단내용 : 발병일로부터 최근 144시간 : 일자/식단명 기재

다. 식재료 납품업체 및 위생관리 현황 등

○ 식재료 납품업체 :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축산물 등 구분 기재

○ 위생관리 현황 : 납품업체 위생 점검(보건증 확인, 납품온도 확인 등) 및 위생교육 실시 현황 기재

3. 주요 조치내용

□ ○○학교

○ 학교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 : 0000. 1. 2.(목) 09:00

○ ○○교육청 전언보고 및 ○○시・군・구청 전언 신고 : 0000. 1. 2.(목) 11:30

○ 학교 급식재료 검수 철저, 급식 조리 위생상태 철저 및 위생교육 실시

□ ○○시・군・구청 및 보건소(역학조사 수행 : 0000. 1. 2.(목) 15:00경

○ 환자가검물(00명) : 학생 00명, 영양(교)사 0명, 조리종사원 0명

○ 환경가검물 : 보존식, 음용수, 식기구 등

□ ○○교육지원청

○ ○○학교에 관련 보고서식 안내 : 0000. 1. 2.(목) 11:35

○ ○○학교 현장 확인 : 0000. 1. 2.(목) 15:00

- 발병환자 개인의 최초 발병일시 및 식품섭취 실태조사
- 급식관련 서류 확인(식단표, 검수서, ccp 등)
- 보존식 및 음용수 위생관리 여부 파악

○ 학교급식 위생관리 철저 지도 : 0000. 1. 6.(월) : 15:00

4.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가. 식단 작성 및 식재료 검수, 종사자 건강 및 위생상태, 조리작업과정 등 조사결과

: 학교 자체, 교육청 및 역학조사반 점검결과 이상 없었음.

나. 역학조사 결과

○ 설문조사 : 유증상 학생 및 조리종사원 00명 실시

○ 환자가검물(직장도말검사/식중독균 등 0종) 검사 : 57명 중 ⇒ 8명(노로바이러스 4명, 황색포도구균 4명 검출)

○ 환경가검물(대장균, 살모넬라) 검사 : 칼, 도마, 식판(3건) ⇒ 모두 음성

다. 보건소(역학조사관)의 종합 결론

○ 조리종사원 및 보존식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급식 음식물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추정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었고,

○ 황색포도구균이 검출된 4명의 독소형 타입이 3가지로 다양하게 검출되어 이번 집단 설사환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음

5. 시사점 및 향후계획

가. 식중독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시사점

○ 식중독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학교급식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앞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식품위생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는 계기가 되었음

나. 식중독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및 향후계획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및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

○ 철저한 식재료 대면검수 및 급식점검

○ 학교 내 매점 식품관리 철저 및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매식금지 등 생활지도 강화

○ 학교 내 집단 환자 감시체계 상시 구축 운영 철저 등

※ 동 형식을 근거로 개인위생 철저 및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

※ 보고시기 : 마지막 환자 발생 후 1개월 이내(종결보고)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로 갈음 가능

[부록 3]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시 관련 점검 확인사항

○○학교, ○○교육지원청

구 분		점 검 내 용	관 련 서 류	비 고
집단 환자 발생 보고	환자 발생 신고 여부	환자 발생 현황 파악	보 건 일 지	
	환자발생 인지 24시간 이내 보고 여부			
	환자 발생 인지 후 은폐·축소 여부			
보존식 보관 및 관리상태		144시간 보관 여부 및 보관 상태	당일제공식단 검식일지	현장 확인
음용수 위생관리			수질검사 결과서, 저수조 청소필증, 저수조 점검일지	
우유 급식관리		납품 및 검수시간, 우유급식 시간, 우유보관 등	우유급식일지 또는 보건일지	
식 재 료 위생관리	식재료 구매계약의 적절성 **(★ 위탁급식의 경우 위탁급식계약서)**	계약방법, 위생사고 발생시 계약 당사자간에 정한 사항 등	급식품목별 물품표준구매 계약서	
	축산물 구매 관련		축산물가공처리허가증 또는 축산물판매신고필증 사본	
	식재료 납품차량		학교급식품 납품차량 등록증 (보냉, 냉동탑차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식재료 납품기사		식재료 납품기사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검 수	납품 및 검수시간, 식재료 온도측정 및 기록, 복수검수 여부	CCP1 검수 기록지, 거래명세서	
조리과정 및 종사자 개인위생 관 리	조리종사원 건강 진단 실시 여부		조리종사원 건강진단결과서	
	개인위생 상태 확인 여부	매일 작업 전 조리원 건강 상태, 복장, 손 위생 상태 점검 및 기록 여부	일일 위생 안전 점검표	
	식단 작성의 적절성	57℃이상으로 제공되지 않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의 가열, 소독 공정 확인 여부 등	식단검토	
	식품취급 및 조리과정	식품중심온도확인, 조리도구(도마, 장갑, 용기 등) 구분 사용 여부	CCP2A 기록지	
	조리원료 및 배식	조리완료 후 2시간 이내 배식종료 여부, 배식도구, 배식학생 위생상태	CCP3A 기록지	

구 분		점 검 내 용	관 련 서 류	비 고
냉동냉장고(실) 온도관리		냉장냉동고(실) 온도관리	CP1 기록지	
식품접촉 표면 세척 및 소독		헹굼온도 71℃ 이상, 기계기구세척·소독 확인, 소독액 제조, 농도확인 여부	CP2B 기록지	
급식시설 설비 위생관리	조리실 정기방역 실시 여부		소독필증	
	방충시설, 수세시설, 환기시설 관리상태			현장 확인
	식품창고 위생관리 상태			"
식품위생법 관련 신고사항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여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기 타	구내매점 판매식품 실태, 매점 위생 점검 일지, 환자발생 보고 이후 학교의 조치사항 등			

[부록 4]

학교급식 위생사고 및 위생 · 안전 점검 결과 행정처분 기준

전라북도교육청(2017.12.29., 일부개정)

1. 목적

가.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 제고 및 신뢰성을 확보함

나. 행정처분의 기준 고시로 학교급식 위생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위생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

2. 기준설정 원칙

가. 예방차원의 기준을 설정하고 처분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둠

나.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행위자(업자) 등에 대하여는 법령이 규정한 벌칙을 적용(처분청에 통보 등)

다. 법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처분기준을 적용함

3. 처분의 종류

가. 계약해지 : 위생사고의 원인이 급식(납품)업체에 있다고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거 장래에 향하여 계약 철회

나. 징계(중징계·경징계) : 위생사고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되어 “공무원 징계령” 등에 의한 양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경고 : 위생사고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되나 범죄 행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주의 : 위생사고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비롯되었다고 인정되고 그 정도가 경미한 단순 과실인 경우

마. 시정 : 위생사고의 원인인 시설 등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처분기준

가. 처분의 일반기준

1) 행정상·신분상 처분 구분 및 병과 처분 가능함

2) 처분항목(사유) 중복 시 또는 1년 이내 동일 처분항목(사유) 적발 시 가중 처분할 수 있으며, 관련자의 업무처리 정황 등을 참작하여 조정 가능

3)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실수로 인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는 경고나 주의 처분하여 공무원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

4) 본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위법·부당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감 처분이 가능 함

나. 사안별 처분기준

1) 위생사고 발생시 처분기준

구분	처 분 사 유		관련자	처분기준	비 고
공통기준	1. 집단환자 발생 보고(신고)소홀 ※ 2명 이상의 동일증세 환자발생 사실 인지 시	① 환자발생 인지 즉시 미보고(미신고)	학교장	주의	인지시점 24시간 내 미보고(미신고)
			담당자	주의	
		② 환자발생 인지 24시간 이후 보고(신고)	학교장	경고	
			담당자	경고	
		③ 환자발생 인지 후 은폐·축소 미보고(미신고)	학교장	징계	고의적 은폐·축소 미보고(미신고)의 경우
			담당자	징계	
	2. 보존식 미보관 또는 훼손 등 관리 소홀		학교장	경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가중처분
			담당자	경징계	
	3. 음용수 위생관리 소홀		학교장	주의	
			담당자	주의	
위탁급식	1. 원인균 검출		위탁급식업자	계약서에 정한규정	계약서에 명시(단, 계약해지시 학운위 심의(자문) 후 처분
			학교장	경고	
			담당자	경고	
	2. 원인균 불검출		위탁급식업자	계약서에 정한규정	계약서에 정하진 않은 경우 역학조사서 등을 참고하여 교육감(장), 학교장이 결정
			학교장	주의,경고	
			담당자	주의,경고	
직영급식	1. 위생사고 원인이 식재료에 기인한 경우		식재료납품업자	계약서에 정한규정	계약서에 명시(단, 계약해지시 학운위 심의(자문) 후 처분
	2. 위생사고 원인이 조리과정, 종사자 개인위생 등에 기인한 경우		학교장	경고	
			담당자	경고	
			원인제공 교직원	중징계	역학조사결과 개인위생에 기인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 방역기관의 역학조사결과 원인균 불검출 시 학교급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료납품업자	계약서에 정한규정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경우 역학조사서 등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결정
			학교장	시정, 주의	역학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교육장(감), 학교장이 결정
			담당자	시정, 주의	

※ 담당자는 학교장의 사무분장에 의한 학교급식전담직원 또는 급식담당교직원

※ 위에 명시한 처분사유별 관련자 처분기준과는 별도로 학교급식법 제2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장 및 그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함

2)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결과 처분기준

지 적 내 용	학 교		위탁급식 업체(업자)	비 고
	학교장	담당자(관련자)		
1. 무표시 제품(표시 기준위반, 허위표시) 보관 및 사용	1회 :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2회 : 경징계	1회 : 경고 2회: 계약해지	- 반품 또는 폐기 - 계약서에 명시 (단, 계약해지시는 학운위 심의(자문)후 처분
2.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1회 :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2회 : 경징계	1회 : 경고 2회: 계약해지	- 반품 또는 폐기 - 계약서에 명시 (단, 계약해지시는 학운위 심의(자문)후 처분
3. 영양(교)사 및 조리사 미고용(미배치)	1회 : 주의 2회 : 경고	-	1회 : 경고 2회: 계약해지	- 시정결과 보고 - 계약서에 명시 (단, 계약해지시는 학운위 심의(자문)후 처분
4. 급식시설 정기방역 소독 미실시	1회 : 주의 2회 : 경고	1회 :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2회: 계약해지	- 시정결과 보고 - 계약서에 명시 (단, 계약해지시는 학운위 심의(자문)후 처분
5. 원산시표지제 미 이행	1회 : 주의 2회 : 경고	1회 :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2회: 계약해지	- 시정결과 보고 - 행정기관에 처분 통보 - 계약서에 명시 (단, 계약해지시는 학운위 심의(자문)후 처분
6. 집단급식소 무신고 (위탁급식영업 무신고)	주의	-	- (계약해지)	- 시정결과 보고 - 계약서에 명시 (단, 계약해지시는 학운위 심의(자문)후 처분
7.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주의	경고	경고	- 시정결과 보고
8. 보존식 미 보존	1회 :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2회 : 경징계	1회 : 주의 2회 : 경고 3회: 계약해지	- 시정결과 보고 - 계약서에 명시 (단, 계약해지시는 학운위 심의(자문)후 처분
9. 세균검사 결과 양성 (균 검출)	1회 : 시정 2회 : 주의 3회 : 경고	1회 : 시정 2회 : 주의 3회 : 경고	1회 : 시정 2회 : 주의 3회 : 경고	- 시정결과 보고 - 재검 2개월 내
10.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회 : 주의 2회 : 경고	1회 : 주의 2회 : 경고	1회 : 주의 2회 : 경고 3회: 계약해지	- 시정결과 보고 - 계약서에 명시 (단, 계약해지시는 학운위 심의(자문)후 처분
11.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1회 : 주의 2회 : 경고	1회 : 주의 2회 : 경고	1회 : 주의 2회 : 경고 3회: 계약해지	- 시정결과 보고 - 계약서에 명시 (단, 계약해지시는 학운위 심의(자문)후 처분
12. 시설기준 위반	1회 : 주의 2회 : 경고	1회 : 주의 2회 : 경고	1회 : 주의 2회 : 경고 3회: 계약해지	- 시정결과 보고 - 계약서에 명시 (단, 계약해지시는 학운위 심의(자문)후 처분
13. 급식위생·안전점검 평가결과 E등급 (60점 미만)	1회 : 시정 2회 : 주의 3회 : 경고	1회 : 시정 2회 : 주의 3회 :경고	1회 : 시정 2회 : 주의 3회 : 경고	- 시정결과 보고 - 재검 2개월 내

※ 1년 이내 자체 위생·안전점검 및 식약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용

구분	점 검 항 목	처분기준 적용내용	비고
시설관리	1. 급식시설·설비, 기구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 냉장·냉동고의 온도, 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수 온도 또는 식기소독보관고의 온도를 기록·관리하는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 조리용수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 또는 살균하여 사용하는지 여부?	시설기준 위반	
개인위생	4.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는지 여부? (다만, 폐결핵검사는 연1회 검사가능)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5. 올바른 손 씻기, 소독으로 손에 의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식재료관리	6.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 여부를 고려하여 식단을 계획하고, 공정관리가 필요한 경우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 식재료 검수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품질 및 신선도와 수량, 위생상태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는지 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작업위생	8. 식재료나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칼과 도마, 고무장갑 등 조리기구 및 용기를 용도별 및 조리 전·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적절히 세척·소독하는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9. 식품취급 등의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 이상의 높이에서 실시하여 식품의 오염이 방지되는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 조리가 완료된 식품과 세척·소독된 배식기구·용기 등은 교차오염 우려가 있는 기구·용기 또는 식재료 등과 접촉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 해동은 냉장해동(10℃ 이하), 전자레인지 해동 또는 흐르는 물(21℃ 이하)에서 실시하는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 해동된 식품은 즉시 사용하는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3. 생으로 먹는 채소류, 과일류를 충분히 세척·소독하는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4. 가열조리 식품의 중심부가 75℃(패류는 85℃) 이상에서 1분이상 가열되고 있는지 온도계로 확인하고, 그 온도 적정여부를 기록·유지하는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5. 조리가 완료된 식품의 온도와 시간관리를 통하여 미생물 증식이나 독소 생성을 억제하는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배식및검식	16. 조리된 음식의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운반 및 배식기구 등을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며, 배식중에 운반 및 배식기구 등으로 인하여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 조리된 식품에 대하여 배식하기 직전에 음식의 맛, 온도, 조화(영양적인 균형, 재료의 균형), 이물, 불쾌한 냄새, 조리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식을 실시하는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세척및소독	18. 식기구를 세척·소독 후 배식전까지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하는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9.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급식시설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소독증명서를 비치하는지 여부?	급식시설 정기방역 소독 미실시	
안전관리	20. 관계규정에 따른 정기안전검사(가스·소방·전기안전, 보일러·덤웨이터 검사 등)를 실시하는지 여부?	시설기준 위반	
	21. 조리기계·기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작동방법 게시 및 교육실시, 관리책임자를 지정, 그 표시를 부착하고 철저히 관리하는지 여부?	시설기준 위반	
	22. 조리장 바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미끄럽지 않게 관리하는지 여부?	시설기준 위반	

☞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점검항목별 부적합 사항 처분기준**

3) 학교급식 위생사고 피해보상 기준

항 목	직영급식 (학교장, 납품업자 등)	위탁급식 (위탁급식업자)	비 고
1. 식중독 원인균 검출 (식재료에 의한 원인)	납품업자 보상	위탁급식업자 보상	납품 및 위탁업자 보증보험증권 등 징구
2. 식중독 원인균 검출 (조리 부적정 등 취급 소홀, 종사자 및 시설 오염 등)	학교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위탁급식업자 보상	납품 및 위탁업자 보증보험증권 등 징구
3. 식중독 원인균 미검출 (원인불명)	학교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자 결정	납품 및 위탁업자 보증보험증권 등 징구

이 기준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5》 식중독 모의훈련 자료(예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모의훈련(식중독 비상대책반 1차 회의)

일 시	00년 00월 00일 10:00~	장 소	비상대책위원실
안 건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참석자			
검토사항	○ 담임교사를 통한 설사 등 학생 증상 모니터링 ○ 평일 보건실 방문 학생수 및 증상 등과 비교, 확인 ○ 주요 증상 및 발생 특이사항 확인 ○ 식중독 의심환자로 판단 시 즉시 보고 및 신고 ○ 식중독 비상대책반 가동		
회의 내용	교감 : 방금 보건교사로부터 20명의 학생이 복통, 구토를 동반한 설사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집단환자 발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후대책을 논의하고자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보건교사와 0학년 0반 담임선생님께서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 : 현재 0학년 0반 학생들과 다른 학년의 2개반에서 산발적으로 같은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20명 있습니다. 설사를 3회 이상하고 구토·복통을 동반한 증세이며, 현재 6명 정도가 보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0학년 0반 담임교사 : 오늘 아침에 결석생이 4명 있어서 학부모와 확인결과 어젯밤부터 학생이 계속 설사를 하면서 복통을 호소하여 2명은 00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급성위장관염이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2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장염 또는 식중독을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각한 3명의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설사와 두통, 복통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명의 학생은 현재 보건실로 보냈습니다. 교무부장 : 오늘이 월요일 오전임을 감안하여 평상시 보건실을 방문하는 환자수와 증상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교사 : 주말을 지내고 보건실을 방문하는 아이들이 다른 요일보다 월요일에 많기는 하지만 오늘처럼 복통과 구토를 동반하면서 설사를 여러 차례 하는 경우는 평상시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교감 : 0학년 0반 담임선생님 혹시 그 반에 증상이 있는 7명의 학생들이 급식외 다른 음식을 공통적으로 먹은 것은 없는지 파악해보셨나요? 지난주의 경우 우리학교에서는 별도의 현장체험은 없었으니 그 반만 따로 실습을 하거나 간식을 먹은 것은 없는지요? 0학년 0반 담임교사 : 네 저희반만 진행된 특별한 활동은 없었습니다. 방과 후에 생일이나 다른 모임이 있었는지도 확인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교무부장 : 0학년 0반을 제외하고 2개 학년의 반에서도 실습이나 간식제공 등 특이사항이 없는지요? 담임교사 : 네 없었습니다. 교감 : 증상을 보이고 있는 3개 학년의 반을 제외하고 다른 학년과 반은 아직 특이사항이 보고 된 것이 없는지요? 보건교사 : 네 말씀드린것처럼 3개 학년 20명의 학생이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다른 학년과 반에서는 아직까지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교감 :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3개 학년에 분산되어 복통, 구토를 동반한 여러 차례 설사를 하는 환자가 20여명이 발생되고 있고, 지난주 우리학교에서는		

	현장체험 등 외부 행사가 없었습니다. 또한 외부 간식이 반에 제공된 경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설사를 3회 이상하고 구토・복통을 동반한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다수이고 0학년 0반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 2반에서도 유사한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 증세의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다수 있어 식중독 환자발생을 의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장 : 네 그렇다면 식중독 의심증세로 보고 발생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장 : 보건소와 교육지원청에 긴급히 유선으로 식중독의심환자 발생을 환자파악팀의 000선생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산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영양(교)사선생님은 조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이 공동으로 먹고 있는 정수기 또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용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무부장 : 정수기 사용이 중지되면 학생들이 당장 물을 먹기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수 등을 긴급히 구입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실장 : 지금 바로 주문해서 긴급히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장 : 그럼 지난번 교직원 회의 시 안내되었던 식중독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인의 임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장선생님들은 다른 학년,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설사나 배가 아프다는 학생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은 학생의 증상을 한 번 더 확인해주시고 보건실로 보낼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각한 증세로 움직이지 못하는 학생이 있거나,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환자이송팀 가동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협력팀장000선생님은 원활한 역학조사 협조를 위해 역학조사 이전에 사전 확인 사항(학생・교직원 현황, 급식인원, 학교도면, 음용수 현황, 식단표 등)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사대책팀 또한 식중독 의심환자 신고 후 학부모 및 학생에게 공지되어야 할 사항 등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감 : 그리고 지금보다 환자가 늘어나거나 역학조사가 실시되면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는 역학조사 지원을 적극 협조해야 관계로 환자파악팀에서 한분이 보건실에 시간별로 가셔서 증가되는 학생수나 현황 기록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 현재 환자가 집중발생한 0학년 0반은 물론 다른 학년 반에서도 발생되는 환자가 없는지 선생님들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역학조사팀이 올 때까지 학생들을 유심히 관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반 모두 신속한 업무파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처리 시 궁금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꼭 교감선생님이나 저한테 협의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장일동 : 네 알겠습니다. 교장 : 임시회의는 이제 마치고 잠시 후 00시에 다시 식중독비상대책반 회의를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회의에서는 급식중단에 따른 대체급식 등 학사대책 수립, 언론대응, 혼란 최소화를 위한 학부모 안내 및 긴급운영위원회 소집 등 중요사안을 협의하겠습니다.

※ 회의록은 예시이며, 학교 상황에 맞추어 진행

《부록 5》 식중독 모의훈련 자료(예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모의훈련(식중독 비상대책반 2차 회의)

일 시	00년 00월 00일 00:00~	장 소	비상대책위원실
안 건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사고 수습 대책		
참석자			
검토 사항	○ 식중독 비상대책반 가동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협조 ○ 대체급식 등 교육과정 사후조치 대책 마련 ○ 혼선 최소화를 학부모 신속 알림 ○ 식중독 발생 서면보고 및 일일환자 보고		
회의 내용	교감 : 00시의 보건소와 위생팀에서는 학교,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처럼 담당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비상대책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부장 : 학생들은 역학조사 실시 후 급식을 먹지 않고 바로 하교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식중독이 크게 일어났다. 원인이 000이더라” 등 학생들이 동요하고 있고 학생의 연락을 받은 학부모님의 문의 전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0학년 담임교사 : 네 저도 같은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학부모님 등 문의 전화에 일괄된 자료 제공 및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장 : 그렇겠군요, 개인의 추측, 의견 등을 자제하고 정확하고 일관된 자료 제공이 중요합니다. 언론은 교감선생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000학사대책팀장은 학부모님들께 보낼 알림장 및 SNS자료를 마련하여 학부모님께 신속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감 :오늘은 긴급하게 급식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하교 시켰지만 집단발병이 수습되어 급식이 재개되기까지는 지금처럼 급식이 중단되는데 대체급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장 : 맞습니다. 급식 중단에 따른 급식 대책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0학년 부장 : 각자 개별적으로 도시락을 지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년 부장 : 저는 도시락 지참에 반대합니다. 아직 식중독 발생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음식을 섭취한다는 건 또 다른 식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단축수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은 4교시 이후 급식없이 하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교감 : 도시락 지참이나 4교시 이후 단축수업 실시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결식대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증상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도 충분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장 : 여러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군요. 조금 후 긴급 학운위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학운위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급식대책 및 학사일정 변경 등을 결정해야겠군요. 영양(교)사 : 식생활관에 대한 역학조사는 모두 마무리 되어 식생활관 및 교내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장 : 그렇군요. 학생들이 모두 하교 한 것을 확인 한 후 방역소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실에서는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무부장 : 식중독으로 학생들이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 보상 등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실장 :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급식 위생사고 보상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역학조사 결과 외부에 원인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 원인제공 업체에 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교무부장 : 그렇군요. 또한 학교에서는 식중독 발생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서면보고와 매일 2회(오전, 오후) 환자발생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교장 : 네 맞습니다. 식중독비상대책반 업무 분장에 따라 000선생님은 교육지원청 서면보고 사항과 매일 2회 환자발생현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학년에서 협조하여야 할 사항 등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세요. 0학년 담임교사 : 아이들이 하교 후에 긴급환자가 발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혹시 학부모님이 연락 할 수 있으니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장 :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전 직원은 00시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각 학년 필수요원 및 비상대책반 구성원은 긴급 시에도 연락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개인위생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인위생 관리 안내 및 수업 시 예방교육이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보건교사 : 네 수업 시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를 담임선생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 그럼 이상으로 대책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운영위 회의 결과 결정된 급식대책 및 학사일정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님께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학사대책팀 000팀장님은 같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은 예시이며, 학교 상황에 맞추어 진행

《부록 6》 가정통신문 (예시1)

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계절과 관계없이 식중독이 연중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함께 지도해야 할 때입니다.

학교에서는 식재료 검수-조리-배식-세척과정에 이르기까지 위해요소 제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급식모니터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학생들의 개인위생(손씻기)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건강한 학생 생활을 위해 아래 사항의 협조를 당부 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기타 간식 등)을 교내에 반입함을 원칙으로 금지합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는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보존식으로 1인분(100g 이상)을 -18℃로 144시간냉동 보관해야 하므로 식생활관에 반드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하교길에 학생들이 부정불량식품을 사먹지 않도록 지도하여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립니다.

20 . . .

○ ○ ○ ○ 학 교 장

《부록 6》 가정통신문 (예시2)

급식 중단에 대한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 일부 학생들 중에서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의 식중독 의심 증상으로 인하여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등 보건당국에서는 원인 규명을 위하여 현재 역학조사 중이며, 설사환자 확산방지를 위해 당분간 학교급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개별 도시락 및 음용수를 지참하여 등교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재발요인이 없으면 급식이 재개되며, 학교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학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에서는 상황처리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오니, 지금까지와 같이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변함없는 신뢰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 협 조 사 항 >

- **개인위생을 위해 음식 섭취 전, 용변 후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1일 8회 30초 손씻기)**
- **중식 도시락 및 음용수(끓인 물) 준비**
- **결석학생 개인학습 지도**
- **하교 후 유증상이 발병된 학생은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 연락**

20 . .

○ ○ ○ ○ 학 교 장

《부록 6》 가정통신문 (예시3)

개인위생 관리에 대한 협조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 일부 학생들 중에서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의 식중독 의심 증상으로 인하여 학부모님의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에서는 원인규명을 위하여 역학조사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음 사항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 조치 사항

► 학생 개인위생 및 학교환경위생관리 강화 : 손씻기 지도, 교내 방역 강화 등
► 학교급식 중단 및 학교 식수 공급 중단 : ○월 ○일 ~ ○월 ○일
► 매점에서 식품판매 금지
► 외부음식 반입 금지
► 학교 집단 환자 감시체계 운영

향후 조치사항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재발요인이 없으면 급식 재개
► 식중독 의심 증상으로 결석하는 학생은 출석 처리

가정에서 협조해 주실 사항

► 개인위생을 위해 음식 섭취 전, 용변 후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1일 8회 30초 손씻기)
► 하교 후 유증상이 발생되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 담임선생님께 전화 연락

20 . .

○ ○ ○ ○ 학 교 장

《부록 6》 가정통신문 (예시4)

급식재개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 일부 학생들 중에서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의 식중독 의심 증상으로 인하여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식중독 등 집단발병이 수습되고, 보건소 등(역학조사관)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식중독 재발요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20OO년 0월 0일부터 급식이 재개됨을 안내드립니다.

끝으로 학교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오니, 지금까지와 같이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변함없는 신뢰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학교 조치 사항

► 식생활관 및 화장실 등 교내 방역 실시

►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

► 음식 섭취 전, 화장실 이용 후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지도

가정에서 협조해 주실 사항

► 개인위생을 위해 음식 섭취 전, 용변 후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1일 8회 30초 손씻기)

► 급식 외의 외부음식 반입 금지

20 . .

○ ○ ○ ○ 학 교 장